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

하중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학교교육활동

1 목적



방과후학교 운영 원칙



- 1. 학교의 장이 학교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자율적으로 운영
-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학부모의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
- 3. 방과후학교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며, 학년 초 정규수업 시작과 동시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별도 계획을 수립・운영
-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 됨.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운영할 수 있음(공교육 정상화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 2025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 적용, 동법 부칙제2조 유효기간)
 -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운영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6조 4호 적용의 배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6조(적용의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3. 26.> 4.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약칭: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①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 중 편성·운영되는 경우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 농산어촌 지역 학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지정하는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등에서 운영되는 경우
- ③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1.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2.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
-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법률 제16300호(2019.3.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2항은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방과후학교 운영



- 1. **(프로그램)**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특기·적성, 교과, 돌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 2. (수요조사 및 정보 공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한 기초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명·수강료·수강정원 등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 학교홈페이지에 방과후학교 코너를 상설로 운영하여 아래 사항을 공개함
- 운영 기간별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 운영을 위한 수요 조사결과, 프로그램 개설 결과
- 운영 시간, 시수, 수강 인원 현황, 운영 후 만족도 결과

3. (운영 방침)

- 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취미·흥미·진로와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 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서는 운영 기간 단위로 강사, 프로그램 별로 작성한다.
- 다. 학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습된 무기력 극복을 위한 심리·학습·진로·진 학 상담 등을 병행하여 효과성을 제고한다.
- 라. 패키지 프로그램 운영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철저히 반영하고, 학생 선택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한다.
- 마. 방과후학교를 각종 재원지원 사업(자유수강권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 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강제 참여를 금지한다.
- 사. 프로그램 별 수강인원은 최대 25명 이내이며, 프로그램 특성에 맞게 운영한다.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강사와 협의를 통해, 희망 강사는 소인수로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다.
- 아. 수강인원 초과 신청 시, 4분기 중 1, 3분기에는 추첨방식(대면/비대면)을 활용한다. 2, 4분기에는 배움의 연속성을 위해 기존 수강생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 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담당할 역량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부 강사, 자원봉사자, 현직교원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활용한다. 정규 수업 운영과 개인의 건강권·휴식권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만 소속 교사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
- 카. 교과 프로그램 운영은 공교육정상화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한다.
- 타. 초등 1, 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영어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놀이·활동 중심, 음성언어 중심으로 적절한 시수를 운영한다. (※ 주당 최대 200분(40분×5회)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운영)
- 파. 방과후학교 회계는 행정 담당자가 관리하며, 집행 결과는 공개한다.
- 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 연기하거나, 다양한 방법(실시간 쌍뱡향 등)으로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운영 중지와 재개를 하고자 할 때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상황을 고려한 결정을 할 수 있다.
- 4. (운영 대상) 방과후학교는 본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5. (운영 시간)

- 가. 학기 중과 방학 중으로 분리하되, 학생의 건강이나 정규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 운영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40분 단위로 운영하되,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정한다.
- 나. 학생의 건강권과 휴식권,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정규 수업 이전(0교시)과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하지 않도록 한다. (단, 방학 기간 중 방과후학교 시정표는 학교 자체 계획으로 운영함)

6. (교재 사용)

가. 방과후학교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재교구선정위원회(방과후학교 소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쳐, 외부 교재(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제3항]

"학교(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에 있어 수업의 범위에 방과후학교 활동 포함(문체부 유권해석, 2010.8.3.)

- 나.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습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다. 외부강사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교재비를 수 강료에 포함할 수 있다.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별도로 수강생에게 판매할 경우, 교재는 정식 출판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교재를 별도로 판매할 수 없음)
- 7. (수강료) 수강료는 프로그램 특성, 예상 수강 인원, 지역사회의 사교육비 수준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8. (활동내용 관리)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단위학교는 학생의 방과후학교 프 로그램 참여 결과를 기재하지 않는다.

9.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 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학생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 나.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담당 강사는 학생 출결 확인을 위한 출석부를 작성, 출결 확인 절차를 거친다.
- 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상습 불참자, 장기 불참자에 대해 별도의 지도 대책을 수립한다.
- 사.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위험 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아.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 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다.
- 10. (프로그램 질 관리) 프로그램의 질 관리 및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 공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11. (학교운영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수익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강사료, 교재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 등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학기 중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12.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가. 구성: 소위원회 위원장은 교감, 간사는 방과후학교 업무담당교사이며, 위원은 교무혁신부장, 교육과 정부장으로 구성

나. 역할

- 1) 방과후학교 운영 전반 지원 (강사 제안서 심사, 강사 관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운영 프로그램 선정 협의 등)
- 2) 안내장을 통한 방과후학교 홍보

4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1. 운영 기간 : 2022년 3월 ~ 2022년 12월까지 운영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분기	2022년 3월 14일 ~ 2022년 6월 10일	보강 포함
2분기	2022년 6월 13일 ~ 2022년 9월 16일	여름방학 및 보강 포함
3분기	2022년 9월 19일 ~ 2022년 12월 16일	보강 포함
4분기	2022년 12월 19일 ~ 2022년 12월 30일	2주간

※ 운영기간은 학교학사일정과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운영 부서

가.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2022학년도 운영(8개)

미술, 클레이&쿠키, 창의수학, 창의로봇, 역사체험, 영어, 컴퓨터, 배드민턴

나. 세부 실천 내용

구분	목표	시기	대상	비고
기초수요조사 및 분석	1회	12월	학생, 학부모, 교원	
(연간)운영계획 수립	1회	12월-1월	담당교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방과후학교 강사 모집·선정·계약	1회	12월-2월	프로그램 운영 강사	
세부운영계획 수립	1회	2월	담당교사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2회	3, 9월	프로그램 운영 강사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1회	3월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4회	기별	전교생	
정보 공시	1회	4월	담당교사	
수강료 징수(기별)	4회	기별	수강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급	매월	매월	해당학생	
학부모초청 프로그램 공개	2회	학기별 1회	수강생, 학부모, 교사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시기 조정 및 변동 가능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2회	학기별	수강생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
프로그램 연간운영 만족도 조사	2회	학기별	수강생	
자체 점검·평가	1회	학년말	교사, 교감	
프로그램 활동 홍보	연중	수시	전교생, 학부모	

강사 모집 및 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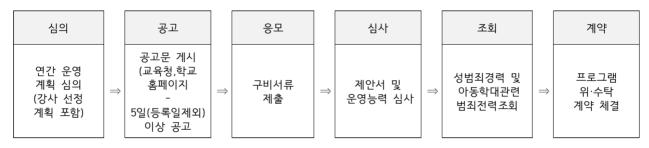
1. 강사 모집

- 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방과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 나. 개인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에서는 평가(예: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총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다. 외부강사 선정 및 위탁계약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 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같은 학교에서의 재계약 시에는 종전의 서류로 갈음 ※ 단,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동의서는 계약 시 마다 징구))

2. 계약 절차

가.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나. 강사 계약의 절차



3. 계약 해지

가. 자동 해지 :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 나. 학교장에 의한 해지
 - 1) 즉시 해지 :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 절차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 문)를 거쳐 해지하며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 2) 절차 해지〉 :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3) 강사 해지 :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 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 4. **강사 평가**: 강사 평가를 실시*(예:*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등)*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단, 총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는 공고 및 선정 절차에 따라 계약함

6 강사 선정 심사 계획



1. 평가위원

- 가. (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
 - 1) 면접 심사 시 외부위원이 50% 이상 참여
 - 2) 제안서(서류심사) 평가 시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 가능
- 나. (역할)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류심사) 및 프로그램능력평가(면접 심사*),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 각종 심사 활동
 - ※ 면접 심사는 대면 또는 비대면 면접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다.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 평가위원 수는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에서 학교장은 제외
- 라. 평가위원은 청렴 및 보안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서약서를 제출한다.

2. 세부 계획

순	절차	일 정	비고
1	공고 및 응모	2022. 12. 12.(월) - 2022 .12. 19.(월)	 하중초등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우편, 방문 접수
2	제안서 심사	2022. 12. 21.(수)	■ 1차 제안서 평가 결과 개별통보
3	프로그램 운영능력 심사	2022. 12. 26.(월)	■ 장소 : 하중초등학교
4	심사결과 발표	2022. 12. 28.(수)	■ 합격자 발표 - 개별 통지

**최종 심사 결과 최고득점자를 강사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의 계약 포기 또는 계약 유지가 어려울경우 차점자 순으로 계약 운영

※ 세부계획일정은 학교학사일정과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재 및 재료 선정 계획



- 1. 교재(교구) 및 재료에 관한 내용은 교재교구선정위원회(방과후학교 소위원회)에서 검토한다.
- 가.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학습교재를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 나. 외부강사는 자신이 직접 제작한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교재비를 수 강료에 포함할 수 있다. (강사가 직접 제작한 교재를 별도로 수강생에게 판매할 경우, 교재는 정식 출판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을 경우, 교재를 별도로 판매할 수 없음)
- 2. 프로그램별로 제출한 교재(교구) 및 재료 선정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8 수강료 및 강사비 책정



1. 회계 관리 및 운영

가. (수강료)

- 1)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별(월별)로 징수한다.
- 2)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수용비는 강사료의 5%로 책정함)
- 3) 수강료, 강사료, 교재 및 재료비는 별도 관리한다

나. (수강료 수납 및 환불)

- 1) 기별, 방학별 선수납을 원칙으로 하며, 수강료는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다.
- 2)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구입비는 소득 공제 대상
- 3) 수강료를 미납할 경우 수강 신청을 취소한다.
- 4) 수강료 환불은 본교 환불 기준에 따른다.

다. (강사료)

- 1) 강사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프로그램 별로 책정한다.
- 2) 강사료는 계약서에 명기한다.
- 3)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청구 시 지급한다.

라. (교재 선정 및 구입)

- 1) 수익자 부담으로 도서 또는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 2) 교재와 재료 구입 시 강사가 직접 구매하여 강사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행정실을 통해 학교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도록 한다.

2. 수강료 환불 규정

분	환불 사유 발생일	환불금액
학교 운영할 수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코로나19	수강 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관련 유증상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총 수강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총 수강 시간의 50%까지)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총 수강 시간 50% 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1	학교	학교 관영할 수 경우 프로나19

수강 포기 의사 전달 없이 발생한 결석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는다.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 결석 사유(질병, 입원 등)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자유수강권 지원



1. 지원목적 :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

2. 지원대상 및 순위

- 가. (1순위)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 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 나. (2순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다. (3순위) 학교장 추천
- 라. 기타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3. 추진내용

- 가. 3순위 학생수는 1~·2순위 학생수의 10%로 함(사안 발생 시 담임교사의 요청에 따라 학생복지심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추천 3순위 대상자로 선정함)
- 나. 자유수강권 대상자에게 연 60만원 내에서 지원(매해 교육청 규정 내에서 운영)
- 다. 월 지원액 및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 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 가능
- 라.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운영

4. 제재기준 및 지도대책

가. 제재기준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의 결석일수가 특별한 사유(병결, 수련활동 등) 없이 수강 시간의 1/2이상일 경우 차기 자유수강권 지원 제외
- 2) 방과후학교 지원 대상자 중 출석률 50% 미만인 학생은 지원금 중지 및 수강료가 수익자 부담금으로 전환됨
- 3) 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한 자유수강권 이용권 박탈 조치(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생의 경우 자유수강권 지원금이 중지됨)

나. 지도대책

- 1) 방과후학교 수업에 특별한 사유 없이 수업에 2회 연속 불참할 경우, 총 수업 시수의 50% 불참할 경우, 프로그램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상담 지도를 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림
- 2) 상담 지도 후에도 불참할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에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유선, 문자 등을 통해 알림
- 3) 제재 사실을 알린 뒤에도 변화가 없을 경우, 방과후학교 참여 또는 자유수강권 지원을 제재함
- 다. 후속조치 : 제재 이후 방과후학교에 대한 참여 의지 및 성실도에 변화가 있을 경우, 상담 등의 지도 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함

5. 기대 효과

- 1) 저소득층 자녀의 방과후학교 참여 확대를 통한 교육의 공공성 제고
- 2) 자유수강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10 프로그램 질 관리



1. 수업의 질 관리

- 가. 강사는 연간, 일별 지도계획안을 작성하여 지도한다.
- 나. 강사는 사전 교재 연구, 학습 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 다. 강사는 계약 기간 내 2회 이상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업을 공개한다. (학기별 1회 공개 수업 실시(학교사정에 따라 시기 조정 및 변동 가능))
- 라. 공개 수업의 학부모 참관록을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평가 및 질 관리를 한다.
- 마. 만족도 조사 등 강사 재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한다. (총 계약기간 2년 미만)

2. 활동평가 및 환류

가. 방과후학교 강사 활동을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여 차기 강사 선정과 다음 년도 방과후학교 계획 수립 에 반영한다.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대책



1. 학생 관리 및 안전지도

- 가. 방과후학교 운영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 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담당 강사는 학생 출결 확인을 위한 출석부를 작성, 출결 확인 절차를 거친다.
-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상습 불참자, 장기 불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각·결석 상황을 해당 학부모 에게 즉시 연락하여 출결을 독려한다.
- 라.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안 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2. 방과후학교 강사 안전교육 실시

- 가. 강사 준수사항 안내 시 안전교육 자료를 활용한 자체연수 및 학생안전관리 사항 안내
- 나. 실험·실습실, 전용 교실을 활용한 경우, 안전 관련 수칙 등을 별도로 안내

3. 방과후학교 안전관리 방침

- 가. 강사는 수업시간을 준수하고 수강 시간 동안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수업 시작 전 기다리는 시간 동안 담당 방과후강사 책임지도)
- 나. 수업 중에 위험성이 있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 사용 전 철저하게 위험성을 알리고 도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다. 강사는 수업 후 바로 귀가할 수 있도록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 라. 강사는 사고 발생 시 즉시 학부모와 방과후 수업 담당교사에게 보고 후 신속하게 조치하고 긴급한 사항의 경우 선조치 후 즉시 교육지원청 보고
- 마. 강사는 수업 중 학생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찰하고 협동하고 배려하는 학습 분위 기 조성에 노력하며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한다.
- 바. 수업이 끝나기 전 학생들의 교실 밖 출입은 삼가며, 필요할 경우 반드시 허락을 받고 출입하게 한다.
- 사. 학년군 또는 여러 학년이 모여 수업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한다.
- 아. 수업 종료 후 강사는 교실을 정돈하고, 각 실 쓰레기통 소거 및 전기 제품 등 전원 차단 등 철저히 확인하여 화재 예방에 힘쓴다.

4. 불가피한 자연재해 대처를 위한 안전관리

- 가.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 활동 자제
- 나. 태풍, 지진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 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학부모 안내 등 학생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
-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안전조치 이행: 석면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 색 공사 등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고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이행
- 6.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 가. 학생의 안전이 확보된 공간 및 시설을 활용하여 안전하게 운영
 - 1) 교실 환기 일상소독(출입문, 책걸상, 사물함) 등 안전 환경 정비
 - 2)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모든 수업 중 마스크 착용
 - 3) 등교수업 시 프로그램별 수강인원 : 최소 1명~최대 15명(강사와 사전협의)
 - 4) 공용교구 활용 자제 및 개인용품 사용
 - 5) 실내공기 순환 방식 공기정화장치 사용금지, 수시 환기
 - 6) 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등교개학 이후 안전한 학교체육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2판 준수
- 나. 개인 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 : 비말 또는 접촉 감염, 밀폐된 공간에서 일정 거리 유지 불가 등 (감염 노출이 우려되는 프로그램은 강사와 협의하여 프로그램 운영 방법(형태) 조정)
 - 1) 온라인 방과후학교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사 및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 하고 방과후학교 길라잡이 지침을 준수하여 온라인으로 실시간 쌍방향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가능
 - 2) 확진환자·감염의심자 등 상황발생 시 감염예방 지침* 및 보건당국의 조치 등에 따라 대응(*유·초·중 등·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2판, 학교생활교육과-6860, 2020.5.8.)
- 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유의사항
 - 1) 체육활동 외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사전 준비	【안전 환경 정비】 - 교실 환기, 일상소독, 방역 등 시설점검 - 체온계,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치 - 이상 징후 대상자를 위한 별도 독립공간 마련 【교구정비 및 사전지도】 - 공용 교구 및 비치된 도서 소독, 활용자제 - 개인용품, 개인 악기 사용하도록 지도 【책결상 배치】 - 한 방향으로 배치, 모둠 구성 책결상은 개별 형태로 배치 【프로그램 계획 수립】 - 개인 활동 프로그램으로 계획 수립	·사전 위생 조치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일시적 관찰실(2층 과 학실) ·강사와 협의하여 각 프 로그램 특성에 맞는 개 인 프로그램 사전 준비 하도록 안내
입실 전	【학생 및 강사 안전점검】 - 강사 발열체크 : 중앙현관에서 측정 후 기록 - 학생 발열체크 : 교실 입구에서 발열체크(붙임4) , 마스크 착용(학생, 강사), 손소독 - 수업 전 5분 환기(창문 상시개방)	·강사 의심증상 발생 시출근 중지 및 업무담당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활동	【안전지도】 - 손씻기, 기침 예절 준수, 수업 중 마스크 착용 등 - 학생 간 최대한 떨어져 앉기(한 줄 또는 지그재그로 앉기) - 실내공기 순환 방식 공기정화장치 사용금지, 수시 환기 - 학생 건강 상태 수시 확인 【프로그램 운영】 - 학생 안전 최우선 고려 - 개인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 짝모둠활동·집단놀이 등 밀접 신체활동 자제 - 감염(비말 등) 우려 프로그램 지양(강사 협의) - 단체활동 가능한 단계 시 모둠 활동 프로그램 운영	·개인위생 상시 교육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귀가 조치 또는 별도 독 립공간으로 이동, 선별 진료소 방문 안내 등 (보건교사에게 연락) ·의심증상 발생 시 대응 방법은 관련 관리지침 및 매뉴얼 준수(붙임1)
활동 후	【학생 안전점검】 - 발열체크, 손씻기 지도, 하굣길 마스크 착용 【안전 환경 정비】 - 교실 환기, 일상소독*(출입문, 책걸상, 사물함 등) * 학생들이 자주 접촉하게 되는 시설 기구 등 매일 표면 소독(자체소독)	·하교 후 가정으로 바로 귀가 지도

2) 체육활동 프로그램

구분	내용	비고
	【안전 환경 정비】	
사전 준비	- 실내(체육관, 강당 등)의 경우 상시 환기 유지 ※ 수업 전, 수업 중 수시로 창문을 개방하여 자연환기 양을 증가시키고, 기상상황,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출입문 및 창문 상시 개방	
	※ 기온 상승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 곤란 시 냉방기기(에어컨 등)를 가동하되, 모든 창문을 1/3 이상 열어둔 채 가동(여건 고려)	·사전 위생 조치 강화 및 예방 대책 마련
	 ※ 내부 순환방식의 공기청정기는 가동 금지 활동 장소 체온계, 손소독제, 비누(세면대) 비치 현황 확인 건강상태(기저질환,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사전확인 및 마스크 착용 	·일시적 관찰실(2층 과 학실)
	지도 -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 교육 - 부상 등으로 수업참관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한 별도 장소 지정 - 수업 중 바닥에 침을 뱉지 않도록 사전 교육 - 개인용품(체육복, 운동화, 안경, 물병, 수건 등)은 개인사용 원칙 준수(타인 대여 및 공유 금지) - 체육활동 관련 용품은 개인 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설·기구 등은 일상소독* 실시	·강사와 협의하여 각 프로그램 특성에 맞는 개인 프로그램 사전 준 비하도록 안내
	[학생 및 강사 안전점검]	
입실 전	- 강사 발열체크 : 중앙현관에서 측정 후 기록 - 학생 발열체크 : 강당 입구에서 발열체크(붙임4) ,	·강사 의심증상 발생 시출근 중지 및 업무담당교사 및 보건교사에게
활동	【프로그램 운영】 - 학생 간 충분한 공간 유지(2m(최소 1m) 이상) -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고 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운동 강도 조절 - 학생 개인별 체력 상태를 고려하여 저강도 활동에서 점진적 강도 조절 - 활동 전후 학생의 부상 예방을 위한 충분한 준비(정리) 운동 실시 - 수업 진행 시 감염 유발 행동(근거리 설명(대화) 및 접촉) 금지 - 상시적인 수동감시체계 운영(학생 행동 관찰) - 본인의 얼굴(눈, 코, 입 등)을 만지거나 접촉 금지(수건 사용) - 타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할 경우 수시 손소독 실시	·개인위생 상시 교육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귀가 조치 또는 별도 독립공간으로 이동, 선 별진료소 방문 안내 등 (보건교사에게 연락) ·의심증상 발생 시 대 응 방법은 관련 관리지 침 및 매뉴얼 준수
활동 후	【학생 안전점검】 - 개인별 건강상태(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확인 - 비누를 사용한 30초 이상 손 씻기, 세면 지도 - 하굣길 마스크 착용	건강상태 이상 학생 발생 시 즉각 학교 내 보고체계에 따른 조치(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보건소 및 1339 신고등) -하교 후 가정으로바로 귀가 지도

기대되는 효과



- 1.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
- 2. 학교 여건에 알맞은 사교육 수요의 교내 흡수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 3.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
-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돌봄 제공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